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 4. 14(금)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6. 4. 13	매 수 총 12매
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	담 당	기술혁신평가국 평 가 정 책 과	과 장 조울래 031) 436-8622 사무관 권기석 031) 436-8623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전방위적 의견수렴 실시

지난 3.29일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한 가이드라인(안)을
과기부, 과총,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브릭 등 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출연연, 유관단체, 대학, NGO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는 인터넷 토론방 개설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는 지난 3.29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참여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것으로
- 가이드라인(안)(※ 첨부 1)을 비롯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진실성 검증 표준절차도(※ 첨부 2)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첨부 3) 등 3개의 자료가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 인터넷 토론방은 총 4곳에 개설되며

- 과기부 과학기술네트워크(SnT Net),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인연합(NGO), 브릭(생물학 연구정보센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4월 13일 부터 2주간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토론방을 개설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토론방이 개설된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인연합과 브릭은 줄기세포연구 논란시 과학기술계의 자체검증 노력을 주도한 기구들로서,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활발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네 곳의 사이트 외에도 추가로 토론방 개설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토론방 주소 》

- 과기부 과학기술네트워크
: www.sntnet.or.kr → 사이버공청회(홈페이지 중앙)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www.kofst.or.kr → 커뮤니티(홈페이지 우측 상단) → 토론방
- 한국과학기술인연합
: www.scieng.net → 내부 사정으로 4.14일부터 게재 예정
- 브릭(생물학 연구정보센터)
: www.bric.postech.ac.kr → 커뮤니티(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 5761번 게시글

□ 과학기술 각계와의 간담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 4.14일 출연(연)과의 간담회(대전)를 시작으로, 4.26일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과의 간담회(부산), 5월초 과학기술 유관단체와의 간담회(서울) 및 과학기술 NGO와의 간담회(서울)를 차례대로 가질 계획이다.

《 간담회 개요 및 참석 범위 》

○ 4.14일 출연연과의 간담회

- 대전 및 수도권 소재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50여명

○ 4.26일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과의 간담회

- 전국 4년제 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 150여명

○ 5월초 과학기술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 과총, 과학기술/공학 한림원, 3개 연구회, 산기협 등 관계자 20여명

○ 5월초 과학기술 NGO와의 간담회

-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등 관계자 20여명

□ 이번 의견수렴은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과 과학기술 각계 관계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 지난 토론회에 비해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부는 이번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향후 가이드라인(안) 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5월말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첨부 : 1.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2. 연구진실성 검증 표준절차도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서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 외에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①“부정행위”는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공로배분 등의 행위와 기타 부당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공로배분”이라 함은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연구기관은 상기 부정행위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내부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제7조 제1항의 자체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5조(연구 환경 및 연구비 관리제도의 개선) ①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과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연구기관은 소속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들은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윤리 교육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제보 및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시행 사항을 연구지원기관에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규정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정행위의 유형 및 범위

나. 부정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책임자

다. 증거자료의 범주

라. 자체검증 위원회 구성 원칙, 검증절차 및 기간

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내용

바.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③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등) ①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의 마련과 함께 연구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체검증체계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춘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기관평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연구지원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대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 제11조 제3항 가 또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제보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관련 내용의 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피조사자도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관련 내용의 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의 원칙과 절차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 제1항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직접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또는 조사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연구기관 내 다른 부정행위들의 조사로 인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④제3항에 의해 연구지원기관이 직접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사의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게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조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근거가 있어 이를 공식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비조사 결과 혐의에 근거가 없거나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경우에는 본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본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조사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이다.

②각 연구기관은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사의 과정에서 이 기간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조사 기간의 연장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검증기구의 형태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관 실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본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의 외부 소속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나. 기관의 외부 소속인의 비율은 최소한 30% 이상

③조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영상,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판정이 끝난 이후 판정의 결과 및 조사자 명단에 대해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보자, 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또는 참고인, 그리고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선 공개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보고와 후속 조치) ①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 제3항 다호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의해 보고를 받은 기관은 조사의 내용과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법률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자의 부정행위

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라.(예비조사의 경우)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마.(본조사의 경우) 관련 증거 및 증인

바.(본조사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사.(본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및 처리결과

아.(본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제재의 종류에 대한 권고안

⑤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8조 제1항의 직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지원기관은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⑥조사의 결과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사법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련된 공동연구에서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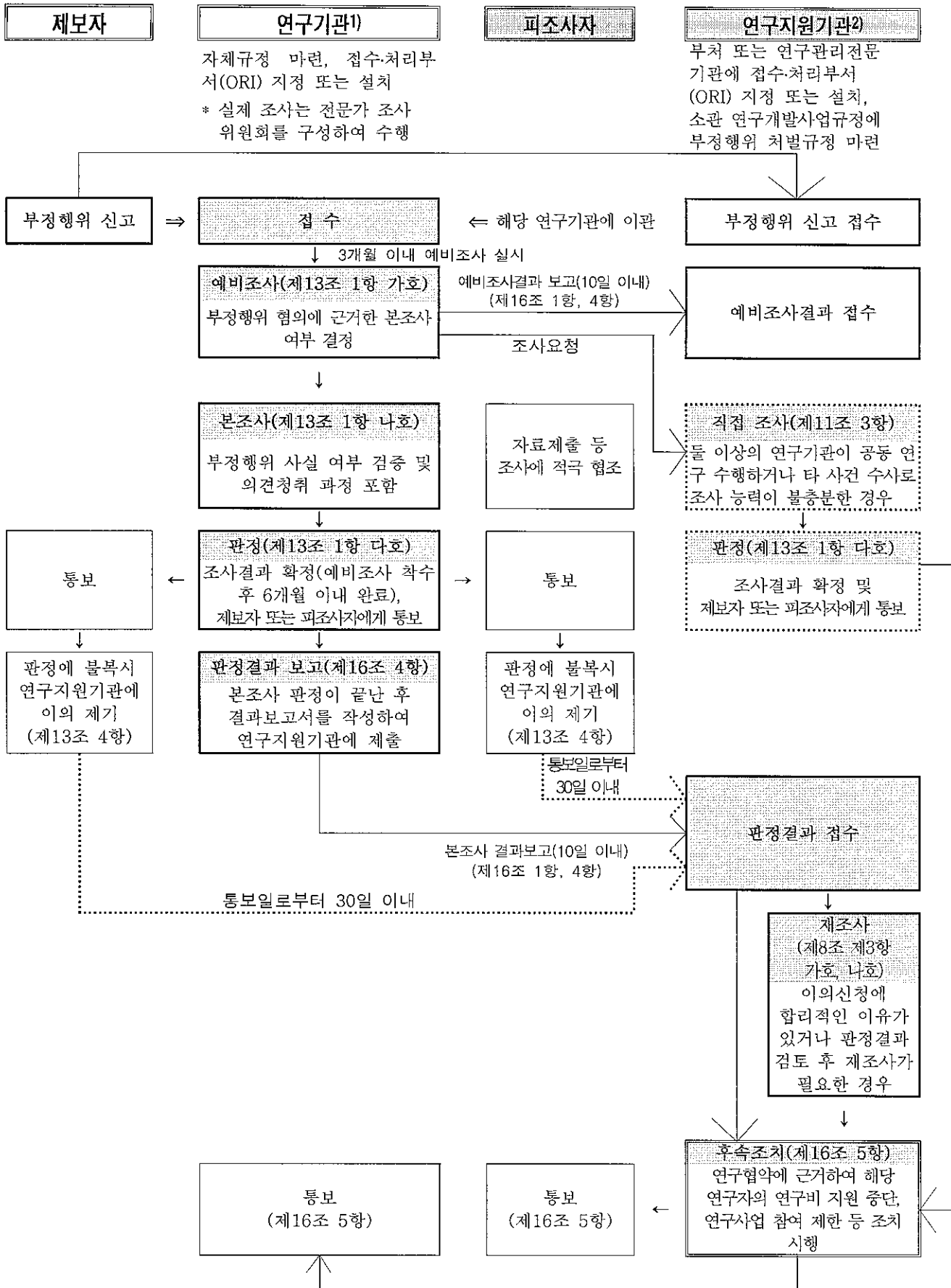
①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1항의 대상기관 중 별표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윤리의 제고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 및 검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05년말 기준 총 27개)

연구진실성 검증 표준절차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 단 출연연, 국공립연, 지난 3년간 평균 정부연구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27개 대학은 '06년말까지 자체검증체제 구축 완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 현재 연구진실성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는 직접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20조를 토대로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등 후속조치 가능

* 황우석 박사의 경우도 동규정 제9조 1항 2호 등을 근거로 협약을 해약

협약 규정	관련 해당 사유	후속조치 종류
제9조 1항 -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협약 해약 가능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제9조 2항 및 3항 - 연구비의 집행 중지 - 현장실태 조사 - 출연금 회수 -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
제20조 1항 - 각호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 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가능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20조 1항 -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 제한

□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진실성 위반에 관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

책임주체	해당 사유	후속조치 종류
연구원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연구과제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해당 연구에 대한 특별 조사 ○연구비 등 환수 ○해당 연구기관에 징계 요구
연구기관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미비 및 제도 운영이 부실한 경우	* 제도운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간접비 산정시 불이익 ○기관평가지 불이익